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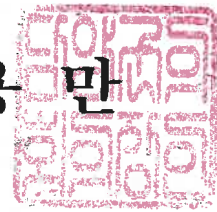
담양군의회규칙 제13호

공 포 문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31일

담양군의회 의장 최 용 만



붙임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1. 제안이유

- 담양군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고 의회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항)

-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나. 위원회 심사의 갈음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3항)

- 공무원이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다.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담양 군의회**”를 “**담양군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담양군 의회**”를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국 외**”를 “**국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제3조**”를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제3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심사)**”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계 획**”을 “**계획**”으로,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또 는**”을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국외출 장**”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담양군의회 의장이 심사위원회**”를 “**의장이 위원회**”로, “**인정 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공무원이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본문 중 “출장자수 **칙**”을 “출장자수**칙**”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 력**”을 “**경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키 며**”를 “**지키며**”로, “**손 상시키**”를 “**손상시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 된**”을 “**지정된**”으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재외공관 장**”을 “**재외공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득한**”을 “**취득한**”으로, “**행 위**”를 “**행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무국외출장 **자는 30일이내**”를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등 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10조 중 “**심사위원 회**”를 “**심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를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 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u>담양 군의회</u> 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담양군의회</u> -----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적용범위) ----- -----.
1. 담양군의회 <u>소속공무원</u> 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1. ----- <u>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 ----- ----- -----
2. 제1호 외의 자(민간인)가 <u>담양군 의회</u> 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u>국 외</u> 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 <u>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 ----- <u>국외</u> ----- -----
3. 제1호,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u>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제3조</u> 의 규정에 의한 경우	3. ----- ----- 「 <u>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u> 」 제3조----- -----
제3조(허가권자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u>때에는</u>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허가권자 등) ① ----- ----- ----- <u>때는</u> ----- ----- -----.

② (생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관운영계획

3. (생략)

4. 그 밖에 담양군의회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심사) ①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 계획-----
----- 위원회 -----
-----.

1. -----

--- 또는 -----

2. -----

-- 공무국외출장-----

3. (현행과 같음)

4. ----- 의장이 위원회-----

----- 인정하는 -----

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경험,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에서는 담양군의회 소속공무원 및 공무에 의한 민간인의 국외출장 적합여부를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업무담당이 된다.

⑤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4에 따른 심사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

②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공무원이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로 같음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5조(소양교육) -----

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출장자수칙-----

-----, ----- 경
력-----

-----.

제6조(현지활동 등) ① -----

----- 지키며-----

손상시키-----
-----.

② -----

----- 지정된 -----
----- 때는 -
----- 재외공
관장-----
-----.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생략)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5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

③ -----
----- 취득한 -----
----- 행위 -----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무원 -----

----- 등록 -----

-----.

제10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
----- 심사위원회 -----

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
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
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
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